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· 용역의 면세범위 조정	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·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• 부동산임대업, 도매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골프장·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• 다만, 다음의 경우는 면세 - 군인,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경우	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·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• (좌동) • 면세 범위 조정 - 군인,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재화·용역 중 부동산임대업, 도매업,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,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 ☞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〉 보도자료 〉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(상세본)	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호 ('18.7.1)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044-215-4326)
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	■ 원천징수의무자(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) •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•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,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 • 항공운송업, 건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■ 원천징수세율 • 지급금액의 17%	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• 30억원 → 20억원 • (좌 동) •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, 금융업 추가 ■ 원천징수세율 인상 • 17% → 19% ☞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〉 보도자료 〉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소득세법 ('18.7.1)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(044-215-4420)
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 사전심사 도입	신 설	■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• 소요량 계산방법 및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 심사신청 • 신청받은 세관장은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 •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30일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•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의무 • 사전심사 결과 1년간 유효 ☞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〉 보도자료 〉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관세환급특례법 ('18.7.1)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044-215-4412)

보건복지부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시도감염병관리 지원단 확대		■ 7개소 운영 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경기, 전북, 제주)	■ 9개소로 운영 확대(충남, 전남 추가)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(043-719-7131)
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 지역 신규 선정	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 변경	■ 59개국 지정	■ 58개국으로 변경 - 콜레라 : 말라위, 잠비아 등 15개국 - AI : 중국(11개 성·시) - 메르스 :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, 아랍에미리트 - 폴리오 : 파키스탄, 나이지리아 등 7개국 - 황열 : 아프리카, 중남미 42개국 - 페스트 : 마다가스카르 ☞(참고)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〉 해외질병 〉 검역감염병 오염지역	검역법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(043-719-7140)
	검역 감염병 오염인근 지역 신규 선정	■ 미지정	■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1개국 신규선정 - '카타르' 지정 ☞(참고)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〉 해외질병 〉 검역감염병 오염지역	검역법 시행규칙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(043-719-7140)
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및 시범운영		■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신고 이외에 환자주변 관리 및 방역 미실시	■ 확진환자 관리 및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■ 매개모기 밀도 및 성충감시, 환자 발생지역에 효율적인 집중방제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8. 7월4주 시행 예정)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(043-719-7165)
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		■ 2만9,000명 지원	■ 6,000명 추가지원 ☞(참고) 보건복지부홈페이지 〉 알림마당 〉 보도자료 〉	근로기준법 ('18. 7월)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(044-202-3556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	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	■ 연소득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 보험료(세대원 성별, 나이 등으로 추정한 소득에 부과) 납부	■ 평가소득보험료 폐지, 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보험료(13,100원) 납부 •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 감액(~2022년 6월)	
		■ 재산 공제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에 보험료 부과	■ 재산공제제도 도입, 재산 과표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~1,200만원 공제 후 보험료 부과	국민건강보험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 ('18. 7월)
		■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	■ 4천만원 미만 소형차(1,600cc 이하), 9년 이상 노후자동차, 생계형(승합차·화물차·특수차) 자동차 보험료 면제	
			■ 4천만원 미만 중형차(1,600cc 초과 3,000cc 이하) 보험료 30% 감면	
			☞(참고) 보건복지부홈페이지 〉 알림마당 〉 보도 자료 〉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% 내려간다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(044-202-2708)
	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	■ (소득요건) 금융소득(이자·배당), 공적연금소득,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간 4,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	■ 연 소득(과세기준) 3,400만원 초과 시 제외	국민건강보험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 ('18. 7월)
		■ (재산요건) 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	■ 재산과표 5억4,000만원 초과하면서 연소득(과세기준) 1천만원 초과 시 제외(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에도 기존과 같이 제외)	
		■ (부양요건) 부모, 자녀 등 직계존비속 외에도 형제·자매까지 광범위 하게 피부양자 인정	■ 형제·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 제외 • 단, 장애인, 65세 이상, 30세 미만의 형제·자매는 예외적으로 연소득 3,400 만원 이하, 재산 과표 1.8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	
			☞(참고) 보건복지부홈페이지 〉 알림마당 〉 보도 자료 〉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% 내려간다	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국민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	고소득 ·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	■ (직장가입자) 보수(월급) 외 소득이 연간 7,2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■ (지역가입자)	■ 연간 3,4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■ 소득 상위 2%(연소득 3,860만원, 필요 경비율 90% 시 약 3억 8,000만원 초과), 재산 상위 3%(재산 과표 5억 9,700만원, 시가 약 12억원 초과) 보험료 인상 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 자료 >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% 내려간다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(044-202- 2708)
상급종합병원 · 종합병원 2·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		■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적용	■ 7.1일부터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의 경우 2·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• 병·의원은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적용 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 자료 > 7.1일부터 상급종합 · 종합병원 2 · 3인실 보험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줄어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· 고시 ('18. 7. 1.)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(044-202-2667)
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		■ 20만9,960원 지원	■ 25만원 지원으로 확대	장애인연금법 ('18. 9월)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(044-202-3321)
보행상 장애 기준 확대		■ 상지절단 1급을 포함한 보행상 장애	■ 기존 보행상 장애 유형에 상지 관절, 기능 1급 장애 포함(신규)	장애등급판정기준 ('18. 8월 예정)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(044-202-3303~4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 확대	■ 중위소득 50%(보험료 순위25% 이하 : 50% 감경	■ 보험료 순위 25%이하 60%감경 변경 ■ 보험료순위 25%초과 ~ 50%이하 40% 감경 확대 ☞(참고) 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('18.7.시행 예정)	고시 개정 ('18. 7월)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044-202-3491)
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	■ 생후 6개월 ~ 만 5세 미만 어린이 지원	■ 생후 6개월 ~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확대 • ('17년) 219만 명 → ('18년) 563만 명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시행규칙, 고시 ('18. 9월)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043-719-6831)
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	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미적용	■ 1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예정	고시 ('18.11월 예정) 보건복지부 의료보장 관리과 (044-202-2601)
기초연금 '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	■ 20만원 지원	■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☞(참고) 보건복지부홈페이지 〉 알림마당 〉 보도 자료 〉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	기초연금법 ('18. 9월)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(02-202-3672)
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	■ 민법에 의거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치매노인에대한 서비스 미흡, 비활성화	■ 치매어르신에 대해 지자체 장이 직접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으로써 두터운 후견서비스(의사결정 지원) 제공	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(044-202-3531)

식품의약품안전처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모든 의약외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 시행	■ 일부 의약외품에 대하여 전성분 표시 시행	■ 생리대, 마스크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에 대하여 전 성분 명칭 기재	약사법 및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('18.10.25)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(043-719-3712)
'휴대용 공기 · 산소'의 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	■ 공산품에 해당하여 별도 허가심사 불필요 등	■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사전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평가 및 수거검사를 받는 등	약사법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('18. 11월)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 (043-719-3710)
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· 통관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	■ 환자 서류준비* →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신청(지방청) → 표준통관예정보고(협회) → 수입·통관 • 제출서류 : 진단서, 제품 설명자 료, 외국허가현황, 사업자등록번호	■ 환자 서류준비(간소화)* → 수입요건면제 확인(정보원) → 수입·통관 • 제출서류 : 진단서, 제품정보 (기타 서류는 정보원에서 직접 확인)	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 확인 등에 관한 규정 ('18. 7월)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(043-719-3773)

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2018년 쌀 · 밭 · 조건불리지역 직불금	■ 11월 지급	■ 쌀·밭 고정직불금,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☞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〉 알림마당 〉 보도자료 〉 직불금 신청	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('18.9월)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(044-201-1776)
가축질병보험 시범사업	-	■ 가축의 질병 치료 보장 보험료의 50%를 국고지원 ☞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〉 알림마당 〉 보도자료 〉 가축질병보험	-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(044-201-2559)
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	■ 방문신청/방문수령	■ 방문 또는 전자민원(정부24)으로 신청/ 방문수령 또는 전자적 발급 ☞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〉 국민소통 〉 법령정보 〉 농지법령	「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」 제정 ('18.6월)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(044-201-1735)
명예조합원 제도 도입	■ 은퇴고령 농업인의 조합 당연탈퇴	■ 은퇴고령농업인도 명예조합원(준조합원)으로 가입 가능 ☞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〉 국민소통 〉 법령정보 〉 입법 · 행정예고 지역농업 협동조합정관례 행정예고	지역농업 협동조합정관례, 지역축산업 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 · 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('18.6.11.)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(044-201-1754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제 확대	■ 수입쇠고기	■ 수입쇠고기와 수입돼지고기 ☞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(법률 제14478호)	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('18.12월)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(02-201-2346)
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	■ 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품·사료·조사료·가축분뇨·퇴비·왕겨·쌀겨·톱밥·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· 예방접종·인공수정·컨설팅·시료 채취·방역·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	■ 난좌, 가금부산물, 남은음식물(사료) 운반, 가금 출하 상·하차 인력수송, 가축사육시설의 운영·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으로 확대 ☞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〉 가축전염병예방법 (시행 2018.7.1.) 〉 법 제17조의3 (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) 및 시행규칙 별표2의2(시설출입차량)	가축전염병 예방법 ('18.7월)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(044-201-2542)
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	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약가격 표시 ■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	■ 농약 실제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•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■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 ☞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〉 국민소통 〉 법령정보 〉 농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	농약관리법 ('18.11.1) 및 동법 시행령 ('18.9.6)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(044-201-1895)